

KB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
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: KB장병내일준비적금
- **상품특징**: 병사봉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,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 제공

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			
	■ 가입시점에 <u>아래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</u>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(※ 1인 1계좌 제한)			
가입대상	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 ^쥐 원본 제출 ※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품가입 불가 단,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, ②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※ 주)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 발급 -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, 나라사랑포탈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- 비대면 신규는 「온라인 가입자격검증서비스*」 통해 제출된 확인서 사용가능 *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(DID: Decentralized Identifiers)와 디지털증명서(VC: Verifiable Credentials) 사본을 제출해			
	변역병 복무구분 및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			
	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			
	※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(산업기능요원, 전문연구요원, 공중보건의사, 공중방역수의사, 공익법무관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예술체육요원, 승선근무예비역 등)는 가입대상이 아님			
상품유형	■ 자유적립식 예금			

	1 71101 0111 2	4 71191 OI÷1/OI ELOI EL710	U TIT4\		
계약기간	■ 1 개월 이상 ~ 24 개월 이하(일 단위 만기일 지정) ※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(또는 소집해제예정일)이며, 단축·연장 할 수 없음				
	*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가입기간 24개월로 제한 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)				
■ 초입금 최저금액은 0 원 이상, 2 회차 이후는 1,000 원 이상 원단위로, 매월(월 초일부				!(월 초일부터	말일까지)
저축방법		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	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- 1
및 저축금액 <u>※ 단,'장병내일준비적금'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</u> 의 보다					
		,	페이지에 게시한 계약기간별		
기본이율					
(세금공제 전, 2024.06.18 기준)	이유	연 3.5%	연 4.0%	<u>면</u> 5	
2024.06.16 기군)		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시 법	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		
			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		당시
			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)		
	※ 단, 모든 우니 계약기간 동(이상이며, 만기해지한 계좌	게 내아Ⴗ	
	구 분		제공조건		우대이율
		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	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		
	[1] 급여이체	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(월 환산)의 2/3에 해당하는		연 0.5%p	
	실적	기간 동안 ^{주1)} , 고객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		L 0.5 /6p	
		급여이체 실적이주의 매월	10 만원 이상인 경우 		
	[2] 주택청약				
	종합저축			연 0.2%p	
	계좌보유	계좌를 보유한 경우주의			
우대이율		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			
(세금공제 전,	[3] 나라사랑	KB국민나라사랑카드(체크) 이용실적이 ^{주4)} 1 회 이상 발생하고,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 KB국민나라사랑카드(체크)를			연 0.5%p
2024.06.18 기준)	카드	<u>석급 인기할 기운 전신철</u> 보유한 경우 ^{주5)}	<u> 클릴까지 KB국민니다자당/</u>	「느(세그)글	-
		저그 마기이 기조 저저의	마이의 기조으로		
	[4] 기초생활	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보인 명의 '수급자증명서'	<u>일일을 기운으도</u> 또는 '사회보장급여 중지통'	지서	연 3.0%p
	수급자	(중지사유:군입대)'를 영업		<u> </u>	
	 ※ 주1) 충족사례:	 적금(계약기간 8개월) 신규역	 식은 `23.10.20 만기익은 `24	6.20인 경우	
	※ 주1) 충족사례: 적금(계약기간 8개월) 신규일은 `23.10.20, 만기일은 `24.6.20인 경우 ⇒ `23.10.1 부터 `24.4.30 까지 급여이체 실적이 5 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우대이율 적용				
	⇒ 적금 계약기간(월 환산)의 2/3: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4개월 이상, 계약기간이 8개월인 경우				
	5 개월 이상(소수점 이하 기간은 버림), 계약기간이 18 개월인 경우 12 개월 이상 ※ 주2) 급여이체 실적: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.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				
	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, 탑라인,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이체 실적				
	* 복무구분이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, 고객의 KB 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 만원 이상의 급여성				I AH
			일부터 말일까지 건멸 30 만원 ','보너스','봉급','성과급','보		_
	•		, _ 1—, 6 H , 6 H , _ = 점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?	,	•
	본인계좌에서 이체건 제외, 입금계좌 정보가 없는 이체건 제외				

- ※ 주3) 충족사례: 적금 만기일이 `24.8.20인 경우
 - ⇒ `24.6.30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 계좌를 보유한 경우 우대이율 적용
- ※ 주4) 이용실적은 KB국민카드사에서 매입(매출반영)된 경우 인정
- ※ 주5) 나라사랑카드 우대이율은 적금의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[선택]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 제공동의서(KB장병내일준비적금 - 나라사랑카드 우대이율)에 동의한 경우 적용
- ※ 주6) 기초생활수급자 우대이율은 적금의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영업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, [필수]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KB장병내일준비적금 기초수급자 우대이율)에 동의한 경우 적용

최종이율

(세금공제 전, 2024.06.18 기준)

계약기간	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	12개월 이상~15개월 미만	15개월 이상~24개월
최종이율	최저 연 3.5% ~	최저 연 4.0% ~	최저 연 5.0% ~
	최고 연 6.5%	최고 연 7.0%	최고 연 8.0%

※ 최고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모두 적용할 때

이자지급시기

■ 만기일시지급식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

■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 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(입금일 ~ 만기일 전일)/365

만기이자 계산방법 (산출근거)



- ※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
- 월 10만원씩 24개월 납입시 세전 200,000원 (최고금리 적용시, 세부사항 변동가능)
- 월 10 만원씩 24 개월 납입시 세전 125,000 원 (기본금리 적용시, 세부사항 변동가능)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(단위: 연 %)

중도해지이율

(세금공제 전, 2024.06.18 기준)

예치기간	이율
1개월미만	0.1
1개월이상 ~ 3개월미만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
3개월이상 ~ 6개월미만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
6개월이상 ~ 8개월미만	기본이율 X 6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8개월이상 ~ 10개월미만	기본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10개월이상 ~ 11개월미만	기본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11개월이상	기본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

- 1. 경과월수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상
- 2. 계약월수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상 ※ 단,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,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
- 3.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
■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워미만 절사) 「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〕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(50∼90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기본이율 x **90%**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산출근거) 기본이율 x **80%**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최저 0.2) (최저 0.2) 기본이윸 x **70%**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최저 0.2) 기본이율 x **60%** x 경과월수/계약월수 기본이율 x **50%** x 기본이율 x **50%** x (최저 0.2) 경과월수/계약월수 (최저 0.1) 경과월수/계약월수 0.1[예치기간] 1개월 3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1개월 ■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(단위: 연%) 경과기간 이 율 만기후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기본이율 X 50% (세금공제 전, 만기후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 기본이율 X 30% 2024.06.18 기준) 만기후 3개월 초과 0.1 ※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 ■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※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됨 ►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- 2026.12.31 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세제혜택 ■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,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(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) ※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■ 신규: 영업점, KB 스타뱅킹 거래방법 ■ 해지 : 영업점 ■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 가능 계약해지방법 ■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(일요일 포함)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중도해지 처리 불가 재예치 불가 일부인출 만기앞당김지급 | 물가 ■ 가능 질권설정 양도 및 ■ 양도 불가 담보제공 ■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%까지 가능 ■ 계좌에 압류^{주1)}. 가압류^{주2)}. 질권^{주3)}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원금 및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제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주 1) 압류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.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.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주 2) 가압류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 주 3) 질권설정: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■ KB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,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 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 ■ 만기 1일전까지 자동이체처리가 가능하며, 그 이후로는 이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 ■ [당행 계좌간 자동이체] 자동이체일이 적금의 만기일과 같거나 만기일 이후인 경우 만기 월에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만기일 전일까지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일을 만기일자 전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. [예시] ① 만기일 2024.12.25, 자동이체일 25일, ② 만기일 2024.12.25, 자동이체일 28일 ☞ 2023.12월 자동이체 처리불가(12월 24일까지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일을 1~24일 자동이체 중 원하는 일자로 변경) ■ [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] 해당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적금으로 입금될 수 있으며, 그 사이에 월이 바뀐 경우 적금 익월분으로 입금처리되어 익월의 자동이체도 미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[예시]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일이 28일이고 23.9.28~23.10.3 휴일인 경우 🕶 9 월분은 미납되고 2023.10.4에 10 월분으로 입금되어 10 월 자동이체건도 미처리(납입한도 초과) ■ [급여중앙공제] 국군재정관리단과의 협약에 의해 적금 만기 전월(전역일이 속한 월의 전월)까지만 처리되므로, 적금 만기월에 납입을 원할 경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. ■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^취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휴면예금 및 출연 주) 출연: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 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/해지 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예금자 예금보험공사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보호여부 보호금융상품 "5 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1인당 최고 5천만원

위법계약해지권	■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^{주1)}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 ^{주2)}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,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주1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 조 제 3 항)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 조 제 2 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 조 제 1,3 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 조 제 1 항)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(제 21 조) 주2) 해지요구서: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
자료열람 요구권	 □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소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•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□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이용제한 사항	■ 이 상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.

3 1% 이자지원금(舊재정지원금)

- ☞ <u>병역법 개정으로 '21.10.14 기준 만기일 도래 된 만기해지계좌부터 지급하며, '23.12.31 까지 입금분에</u> 한해서만 적용합니다.
 - ※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,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는 1%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 1% 이자지원금(購재정지원금) 지급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(☎02-3146-6544(6545)) 및 병무청(☎042-481-3043, 사회복무요원에 限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				
1% 이자지원금 (舊재정지원금) 이란?	'장병내일준비적금'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. ※ 1% 이자지원금(舊재정지원금)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				
	■ 이 적금 예금주로서 <u>아래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</u> 하는 경우				
	① 만기계좌 ② 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^쥐 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) 원본 제출				
지급대상	※ <u>주) 확인서 발급</u> - 복무중인(전역전), 또는 복무하였던(전역후)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- 복무사실확인서(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)는 복무기간이 24 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만				
	<u>만기해지시 제출가능</u>				
	복무구분 변역병 및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경찰 기무경찰 기무경찰 기무경찰 기무경찰 기무경찰 기무경찰 기무경찰 기				
	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				

지급금액	■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%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※ 실제 예치일수: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※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)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
알아두실 사항	 중도해지 계좌는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전역일이 명기된 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1%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해지 후 서류제출하더라도 소급지급 불가) 만기 해지 후 동 상품 재 가입 불가 (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방지) 복무기간 단축・연장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자가 상이한 경우, 1% 이자지원금 지급기준 시점*은 다음과 같습니다.(매칭지원금 지급기준 시점도 동일) *복무기간 단축시(만기일>전역일): 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시 1% 이자지원금 지급 가능 복무기간 연장시(전역일>만기일): 연장된 전역일 이후 해지시 1% 이자지원금 지급 가능 1% 이자지원금은 국가(국방부, 병무청)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,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,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1%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금가입 · 추가납입 · 정부지원금(1% 이자지원금, 매칭지원금) 지급 및 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합니다.

4 매칭지원금

- ☞ 병역법 개정으로 지급 시행일은 '22.1.1 이며, 시행일 이후 납입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
 - ※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 및 1% 이자지원금과는 달리,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<u>국방부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급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(☎02-3146-6544(6545)) 및 병무청(☎042-481-3043, 사회복무요원에 限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</u>

구 분	내 용	
매칭지원금이란?	'장병내일준비적금'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'사회복귀지원금입니다. ※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	
지급대상	■ 이 적금 예금주로서 「1% 이자지원금」조건과 동일합니다. ※ 단 지급방법은「1% 이자지원금」과는 달리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(사회복무요원 外 대상자) 및 병무청(사회복무요원)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 (만기해지일의 다음월 중) 합니다.	
지 급금 액	■ 23 년도까지 납입분 : 적금 '납입건 별 금액'(A)에 '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'(B)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'1% 이자지원금'(C)을 합산한 금액(A+B+C)에 관련 법령(병역법 시행령 제 158 조의 2 제 1 항 제 2 호)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*을 곱한 금액 *납입기준 시점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상이함 (22 년도 납입건 : 33% / 23 년도 납입건 : 71%)	

※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)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■ 24 년도 이후 납입분 : 적금 '납입 원금'의 100%*에 해당하는 금액 *관련 법령(병역법 시행령 제 158 조의 2 제 1 항)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 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, 제한사항이「1% 이자지원금」과 동일하므로 1% 이자지원금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매칭지원금만 지급 불가합니다. 단, 2024 년도 이후 신규계좌의 경우 매칭지원금만 발생하므로 매칭지원금만 지급합니다. ■ 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,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,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지급이 알아두실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사항 ■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■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 ■ 매칭지원금의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

5 유의 사항

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.

(만기해지일의 다음월 중)지급처리 합니다.

- 이 적금을 예약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약신규일(실제 적금의 신규일)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신규가 불가합니다.
- 이 적금은 'KB 국민은행'과 '국방부(병무청)'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,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KB 국군희망준비적금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도 이 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,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.
 - ※ 충족사례: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24.03.14 / 적금 만기일 2024.03.21
 - ⇒ 2024.03.14 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적용, 2024.03.21 적금 해지시 만기해지 적용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(P)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999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

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제 1 항에 따라
(20	 24.07.26 현재)
	페이지 9 / 9